

#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차량운행 관리규정

제정	2016. 2. 11.
일부개정	2020. 12. 24.
일부개정	2023. 7. 3.
전부개정	2026. 05. 25.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이하“본회”라 한다) 소유차량의 운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의 보존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로서 본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차량을 말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라 함은 본회의 임무·정원 및 업무량을 참작하여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4. “전용차량”이라 함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된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 차량”이라 함은 전용차량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
6. “차량관리부서”라 함은 차량의 정수관리 및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정비”라 함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8. “수리”라 함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회에서 관리·운용하는 차량에 관하여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 제2장 차량 정수 관리

**제4조(차량의 구매 및 임차)** ① 전용차량 및 업무용차량을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용차량 및 업무용차량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 기간은 최소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의 특성상 임차기간이 3년 이하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회장의 허가를 통하여 임차를 할 수 있다.

③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각 부서의 연간 사업추진과 행사 등의 지원, 운행소요를 판단하여 차량임차에 관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관리·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정수배정)** 사무처 공용차량 대수는 다음과 같이 배정하여 운영한다.

1. 업무차량 : 1대
2. 전용차량 : 1대
3. 각종사업추진에 필요한 차량은 사업비 예산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제3장 차량 기록 관리

**제7조(기록관리)** 회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차량배차신청서
2. 차량유류수불대장
3. 차량운행일지

- 4. 차량정비대장
- 5.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점검)** 회장은 연1회 이상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등 차량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제4장 차량관리 및 운행**

**제10조(차량관리부서 지정)** 차량관리부서를 물품관리부서로 하고, 각종 사업추진에 필요한 차량을 운행하는 해당 사업부서로 한다.

**제11조(차량의 사용)** ① 본회 소속 직원에 한하여 차량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직원 이외의 자에게도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출장 시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차량 배차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모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본회 기관명, 로고 등을 이용하여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차량 및 의전·감사·조사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기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유류구입)** 차량 주유시에는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공공조달 주유소에서 주유하여야 한다.

**제13조(차량관리 방법)** ① 차량관리부서에서 보유한 차량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등은 당해 관리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부서에서는 당해 차량에 대한 운행,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기타 차량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제5장 운전원의 관리

**제14조(차량점검)**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며,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이상 유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5조(금지사항)** 차량운전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
3. 배차 받은 차량을 타인에게 대리 운전하게 하는 행위
4.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5. 차량열쇠를 차에 놔두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6.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7. 본회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8. 주·정차 금지구역이나 차량출입에 지장을 주는 위치에서 주차하는 행위
9.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지역 외로 운행하는 행위
10. 기타 차량 운행 시 도로교통법 등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

**제16조(사고보고)** 차량운전직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용차량 사고 발생보고를 작성하여 차량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제17조(과실에 대한 책임)** ① 운전자가 차량운행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기차량손해담보 자기부담금(이하 “자기부담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고 운전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외의 사유로 운전자가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본회 예산의 범위에서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차량 운행 중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범칙금·벌금 등은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부담한다.

**제18조(차량반납)** 차량운전직원은 배차승인 시간내에 차량관리부서에게 차량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지연 등으로 배차승인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유선 등으로 운행시간 연장을 통보하여 운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장 보 칙

**제19조(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2026. 05.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제4조 관련)**

차종	차형	배정대상	최단운행한
승용 (전용)	대형승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장</li> <li>○ 사무처장</li> </ul>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물품관리법」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승용 (업무용)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 다목적승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li> </ul>	
승합 (업무용)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 다목적승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li> <li>○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회원단체</li> </ul>	

[별표 2]

## 차량정수번호 부여

###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차 종 별	차 형 별	분 류 번 호
승용차량	○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경형승용차 ○ 다목적.기타승용차	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승합용차량	○ 대형승합차 ○ 중형승합차 ○ 소형승합차 ○ 경형승합차	나 1 나 2 나 3 나 4

###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 **【예 시】**

①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로 구입하려는 경우

세종 - 가 2 - 10

②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에서 대형승합차량을 3번째로 구입하려는 경우

세종 - 나 1 - 3